

공시송달 공고

1. 제 목 :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2. 공고기간 : 2026. 9. 22. ~ 2026. 10. 6. (15일간)
3. 공고대상

부과대상		위반내용	부과금액		반송 사유
성명	주소		과태료	20%감경 (자진납부)	
박*민	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길 ***, *동 2층 201호 (문학동, ****빌)	폐기물 관리법 제8조 규정을 위반한 사실 (담배꽂초,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)	50,000원	40,000원	폐문부재

4. 공고내용

- 가. 폐기물관리법 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,
- 나. 의견제출기한 내에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동 행정복지센터(☎032-728-6506)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,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.
- 다.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8조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시에는 과태료 금액의 20%를 감경 받으실 수 있으며,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 규정 적용대상자는 50% 범위 내에서 감경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라. 의견제출 기간이 지나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문학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의신청을 하시면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 예정이며,
- 마.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납부를 하지 않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되며,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되며,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

2026년 9월 22일

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동장

